

#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

- 지원대상 : (업종) 제조 및 기타업종(건설업 제외)

(규모) 50~299인

\* <우선순위>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(50인~150인),  
③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(順)

- 지원내용 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\*

-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(2인 1조)가 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

\* 유해위험요인 파악,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, 매뉴얼·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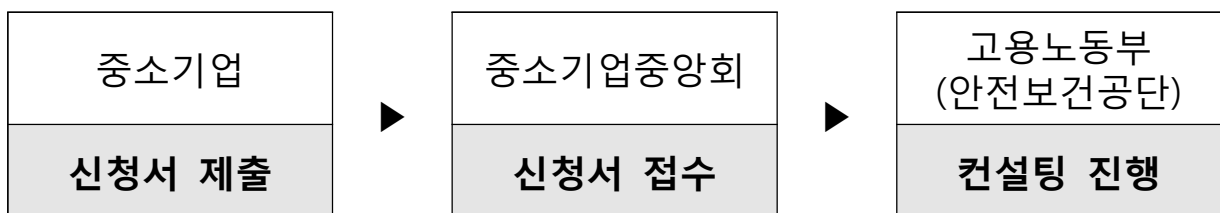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 : '22. 4. 14(목) ~ 4. 22(금) (9일간)

- 소요비용 : 무료

- 지원절차 : ①신청서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

(이메일)smsfes@kbiz.or.kr / (팩스)02-786-1892

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안내 예정(선정 시)



- 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(전화) 02-2124-3273

#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(기업용)

신청 기업	기업명(본사명)	사업자등록번호
	총 근로자수 * 본사 및 공장(지점, 지사) 소속 전체 근로자수 합산 기재	전화번호
	소재지	대표자 성명
신청 기업 정보	<b>[신청 기업의 공장·지점·지사 등 사업장 현황 기재]</b>	
	• ( ) 공장(지점, 지사), 근로자수 ( ) 명	<b>[신청 시 유의사항]</b> ※ 지원대상: 제조업·기타사업 <u>기업별 300인 미만</u> (300인 이상 기업 지원 불가) ※ 지원방법: 본사 및 본사에서 지정하는 1개 사업장 컨설팅(본사 참여 필수)
	• ( ) 공장(지점, 지사), 근로자수 ( ) 명	
	• ( ) 공장(지점, 지사), 근로자수 ( ) 명	
• ( ) 공장(지점, 지사), 근로자수 ( ) 명		
컨설팅 사업장 정보	컨설팅 지정 사업장명	소재지
	지정 사업장관리번호	지정 사업장개시번호
	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: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기관 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선임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※해당사항 체크	
	사내 협력업체 유무: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※해당사항 체크	
	담당자	성명
전자우편 주소		

2022년도 고용노동부-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」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본사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공지사항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## 처리절차

